

제1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0년 7월 19일 이 한동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7월 21일 우리측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 개최 일자 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 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을 오고가면서 2000년 한 해동안 모두 4차례 개최되어 남북공동선 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여러 분야에서 개최된 회담 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재규(통일부 장관)	단 장	전금진(내각 책임참사)
대 표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김순규(문화관광부 차관) 김형기(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대 표	허수림(민족경제협력련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처장) 유영선(교육성 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량태현(내각 사무국 과장)

* 우리측 김형기 대표와 북측 허수림 대표는 제3차 회담부터 참가 (1, 2차 회담에는 우 리측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북측 김영신 무대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

가)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우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제반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로 ‘공동이익 추구’, ‘실천중시’, ‘쉬운 문제부터 해결’ 등을 제시하였고,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에 충실’,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 타결’, ‘실천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이행’해 나가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양 정상의 뜻과 민족적 요구,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조치로 우리측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 연내 착공, 8·15 광복절 주간의 남북공동경축 등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남북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그 실천을 결의하는 통일행사 개최, 재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분야별 이행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경제위원회」 등 실천기구 구성을 제의하였다. 북측도 실천기구의 설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쌍방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문산-개성간 24km)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존중과 공동이익 추구 방향의 대화
 -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
- 200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2000년 8·15에 즈음,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개최
-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및 적절한 관련 조치
-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및 빠른 시일내 관련문제 협의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례 전체회의와 수시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등 7개항에 합의하여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당초 우리측 대표단은 8월 31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 등으로 하루 늦어진 9월 1일 서해항로를 통해 귀환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 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북측에 요구하고, 전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 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파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실시
 - 실무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
 -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도 협의
- 남과 북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
 - 조속한 시일내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문제 협의
- 남북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9월중 실무접촉 개최
 - * 차관형태의 식량 제공문제 검토 추진
-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 9월중 개최하여 착공식 문제 등 협의
-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 관광단 규모는 각기 100명 정도로 하며 9월중~10월초 실시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0. 9.27~30, 한라산
 - 대표단 규모 :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

한편, 북측의 김용순 특사일행은 우리측을 방문(2000.9.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문화·산업시설도 둘러보았다.

김용순 특사의 방문을 통해 남북은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었다.

< 특사 방문시 합의사항(요지) >

-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서울 방문
-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 환영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9.20 적십자회담 개최
-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25 서울 개최, 제도적 장치 타결
- 빠른 시일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 북측의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 실시 등 추진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 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장관급회담의 적극적 역할, 남북공동선언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운영의 틀 정립, 남북간 제반교류와 협력과정의 제도화를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간 당면한 현안문제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협력과제들을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남북간 교수·대학생 및 문화계 인사들의 교류, 서

울·평양 정기친선축구대회 등을 추진하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기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전반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심적인 협의체임을 재확인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이 생산적인 결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 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여러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사업들을 계속 협의·추진
-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말부터 생사교환,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
-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 교환 문제 등 교류·협력 문제를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
- 제4차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 장소는 추후 협의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에서 다소 늦춰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북 쌍방은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특정인사에 대한 비방, 취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미준수, 이산가족상봉시 정치선전 등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우리측 「2000 국방백서」의 주적(主敵) 개념 등을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북측이 요구한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포괄적 경협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협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

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12.26경 평양에서 1차 회의 개최
 - 전력협력, 철도 ·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협의
- o 어업부문 상호협력 : 북측이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관계자 접촉(빠른 시일 내, 금강산)
- o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 o 이산가족 생사확인(2001년 1·2월, 각 100명), 서신교환(2001년 3월, 300명)
- o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년 2월말, 100명)
- o 북측 한라산 관광단(2001년 3월), 경제 시찰단(2001년 상반기) 파견
- o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측에 통보
- o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1년 3월중 개최(장소 추후 협의)

제2절 남북적십자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측은 6월 17일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대남전화통지문을 보내와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갖자고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중 판문점에서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에 천명된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하면서 대표단은 쌍방 적십자 단체 부책임자급을 수석 대표로 하여 대표 3명, 수행원 2~3명으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수락의사를 표명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6월 2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6월 21일 대남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장소를 금강산 호텔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면서, 아울러 장소를 옮기는 조건에서 회담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측은 6월 2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장소 수정 제의에 대해 동의하면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하되, 금강산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직통전화와 취재기자단의 취재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측이 6월 23일 우리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우리측은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수행원 3명, 지원인원 4명, 취재기자 6명 등 총 16명이 참가하게 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기륜(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단 장	최승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고경빈(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최기성(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대 표	리금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창훈(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

* 우리측 최기성 대표는 제2차 회담부터 참가(제1차 회담에는 김장균 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이 참가)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 회의 4회, 실무대표접촉 2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8·15를 전후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9월중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관련하여, 방문단은 인솔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30명 등 총 161명으로 구성하며, 교환 방법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순차방문 형식을 제시하였다.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면회소를 8월중에 판문점 「자유의 집」 또는 「통일각」에 설치하여 월별 4회, 매회당 100명씩 면회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서신교환도 매월 2회 이상, 생사가 확인된 숫자 내에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납북자·국군포로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하는 사람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후 송환하며,

구체적인 송환방법 등은 9월중 협의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북측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일괄 협의하되, 비전향장기수 송환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측은 우선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 동시에 교환방문하며, 방문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기자 20명 등 총 15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머지 교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1985년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하면, 북측은 송환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송환 10일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은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다는 기본입장은 같았으나,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후 9월중 비전향장기수 교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시한 데 대해 북측은 ‘선 비전향장기수 송환, 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제2일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기존입장을 바꿔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한 후 9월초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고 이어 적십자회담을 계속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를 협의·타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측이 수용함으로써 곧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가졌다.

그 결과 방북 제3일째 열린 전체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에 채택·서명하였다.

쌍방은 이 합의서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시 교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북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하기로 하였다.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요지) >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산가족 100명씩 서울과 평양 동시 방문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 운영
 -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 전원 송환 즉시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 · 확정
- 북측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 송환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2000년 8월 26일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제2차 적십자회담을 9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북측은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의 김용순 특사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는 가운데 제2차 적십자회담 개최 일자도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적십자회담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9월중에 시작하여 빠른 시일내 마칠 것과, 10월 중순부터 매월 2회 통보하고, 서신교환은 10월부터 매월 2회씩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사업에 대해서는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여 매주 쌍방 각기 100명씩 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2차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 방문단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1차 적십자회담에 이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해결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은 연내 2차례 추진하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등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사·주소확인 사업은 경험부족 등을 내세우며 시범적인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하자고 주장하였고, 서신교환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12월 중순경 제3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확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측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문제와 관련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되,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12월 중순에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은 2차를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를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을 계속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 결과 쌍방은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환키로 하였다.

생사 및 주소확인사업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고 서신교환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데 따라 진행하며 11월중에 시범적으로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사업은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요지) >

- o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100명씩)
 - 제2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동시 교환
- o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교환하여 생사·주소확인하여 통보
 - 9·10월에 시범적으로 100명씩, 그 후 교환 규모 확대
- o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후 서신교환
 - 11월중에 시범적으로 생사·주소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규모 확대하며,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
- o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문제를 협의·확정
- o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 2000년 12월 개최하기로 한 제3차 적십자회담은 북측의 사정으로 2001년 1월말(29 ~ 31일, 금강산)로 연기

제3절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군사실무회담

1.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등 군사분야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견지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필요성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9월 11일 김용순 특사 방문시 동행하여 서울에 온 북측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북측은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해 왔다.

남북 쌍방은 9월 13일부터 18일 사이 4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회담일정 등을 협의한 결과, 마침내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9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9월 20일 남북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단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하면서 북측 대표단이 회담개최 예정일 하루 전에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이 이같은 북측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북측 대표단은 9월 24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였다. 북측 대표단은 서울과 제주도 사이를 우리 군용기편으로 이동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조성태 국방부 장관	단 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차수)
차석대표	김희상 국방부장관 특보 (중장)	부단장	박승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중장)
대 표	김국현 국방부 국장 (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국장 이인영 합동참모본부 과장 (대령)	단 원	김현준 인민무력부 보좌관 (소장) 로승일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유영철 판문점대표부 부장 (대좌)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또한 상호 부대이동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정보 교환,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당면과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남과 북의 인원, 차량, 기재의 비무장지대 내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무급에서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의 견을 조율, 5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진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제주도에서 한라산 영실과 항몽유적지, 분재예술원을 방문하고, 9월 26일 서울로 이동,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 쌍방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
-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안에 각 측의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와 안전 보장
 - 구체적 세부사항은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추진
-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0년에는 개최되지 못하고 2001년으로 넘어가게 됨

2. 남북군사실무회담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10월 7일 조성태 국방장관이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10월 13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10월 11일 답신에서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어 10월 16일에는 이찬복 판문점대표부 대표가 마이클 던 유엔사 부참모장측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서장급회의’를 제의하였다.

이후 10월 18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열린 유엔사-북측간 4차례의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11월 16일 유엔사측과 북측은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1월 17일 열린 제11차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비준하여 발효시켰다.

이어 남과 북은 전화통지문과 연락장교접촉을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11월 28일 판문점「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김경덕 국방부 차장 (준장)	단 장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대령) 이명훈 작전부대 (대령) 이명훈 육군건설단 (중령) 정덕모 건설교통부	단 월	배경삼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정창욱 인민무력부 (상좌) 리병우 인민무력부 과장 (대좌) 김기복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 우리측 정진양 국토관리청 도로건설과장은 제1차 회담에만 참석

* 이명훈 대령과 이명훈 중령은 동명 이인

남북 쌍방은 제1차 회담(11.28, 통일각), 제2차 회담(12. 5, 평화의 집), 제3차 회담(12.21, 통일각)을 통해 남북관리구역의 범위와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서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이 먼저 제1차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공사간에 적용될 「공동규칙에 관한 합의서(안)」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제2차 회담에서 북측도 우리측 안을 반영한 '북남관리구역 설정과 철도·도로작업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합의서의 명칭, 지뢰제거의 시기, 공사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공사인원과 경계병력간 식별문제 등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남북관리구역의 폭, 지뢰제거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상당히 좁혔다.

제3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이 「200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기한 데 대해 비난하면서 실질적인 토의를 회피함으로써 타결짓지 못하고 제4차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절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 김용순 특사 방문(9.11~14)시 합의에 따라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와 대북식량차관제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실무접촉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이근경(재정경제부 차관보)	정운업(무역성 지도국장)
대 표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리영남(재정성 부국장)
	김상열(산업자원부 심의관)	서정찬(무역성 과장)
	안창호(법무부 과장)	최정식(재정성 과장)

* 우리측 안창호 대표와 북측의 최정식 대표는 제2차 접촉부터 참가(제2차 접촉부터 회담대표가 쌍방 각기 3명에서 4명씩으로 증가)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은 2000년 9월 25일~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4개의 제도적 장치는 모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합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해 대표 및 수행원간의 개별 접촉·협의를 제의하

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제2차 장관급회담(8.29~9.1)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을 적시한 만큼 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실무접촉 보다는 전체회의를 통한 합의서안 검토를 제의하였다. 또한 공동보도문안 발표는 기본원칙과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고 있다는 선에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2개안에 대해서는 향후 장관급회담에서 확인한 후 차기 접촉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각기의 입장과 조문별 공통점·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과 국제관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북측은 이 부분이 미흡하였고, 송금·수용보상, 이중과세방지방법 등 일부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측안과 상당부분 차이점을 드러냈다.

쌍방은 합의서별 구체적 조문내용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입장 교환방식으로 조율하여 제2차 접촉(평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는 데 따라 향후 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요지) >

-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타결키로 합의
-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함
-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필요에 이해를 같이 하고 절차에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함
-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함

2.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우리측은 제2차 실무접촉을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데 따라 10월 13일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실무절차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10월 17일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10월 18일에 실무접촉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북측은 10월 2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2차 실무접촉을 11월 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특히 4개 합의서의 전문에 남북사이의 경제교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할 것과 내국민 대우, 중재인의 수 및 자격,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합의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는 어렵다고 하면서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지 과세, 양측의 재결집행제도 이용, 무이자 청산계좌 개설 등을 제의하

고 쟁점 부문은 부문별 실무접촉에서 협의하자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문제와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문제로 분리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식량분배 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식량차관 계약서상 ‘투명성 보장’ 규정에 따라 식량분배 과정과 분배실적의 설명 및 현장방문과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쌍방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전체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조정, 11월 11일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하고 가서명하였다.

한편 쌍방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규모, 시기, 조건, 투명성 보장을 포함한 절차 문제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4개 합의서 (요지)>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前文 및 12조
 - 상호 투자의 허용 및 보호, 수용·국유화 제한 및 보상, 투자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상호 정보제공, 분쟁해결방법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前文 및 28조
 - 남한과 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중심으로 양측 과세권의 所在와 범위를 정하고, 거주자·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사업소득 면제방식, 투자소득 세액 공제방식), 상호협의절차, 정보교환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前文 및 19조
 - 남북공동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 해결절차, 중재인의 자격 및 활동,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집행보장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前文 및 10조
 - 남북한이 합의하여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결제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
 -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미달러화) 등 규정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우리측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부터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별로 구체적 문제를 협의·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을 북측에 꾸준히 제의해 왔다.

특히 경제분야는 전문적인 분야가 많으므로,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북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본 데 이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첫 회의를 2000년 12월 26일경에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12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사명과 임무를 규정, 운영 방식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 다음,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한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2월 2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표단은 차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자문단 4명, 수행원, 기자 등 총 35명이 참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어 남과 북은 두 차례의 전화통지문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차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을 총 5명으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쌍방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원장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유창무(산업자원부 심의관)	함기석(철도성 국장)
	최재덕(건설교통부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김해종(국무총리실 심의관)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회의에서 우리측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시한 바 있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를 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전력협력문제와 관련, 양측의 전력사정과 운영상황·기술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

안할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우선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현지 실태조사단을 2001년 1월에 구성하여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관련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한 접촉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 제정 및 전력·용수공급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당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력협력,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 및 동해어장 제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전력협력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위원장 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과 임무에 관한 합의서 및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에 대해서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계속 협의하며,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5절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1. 업무재개 배경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은 정상들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

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측은 2000년 8월 9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전금진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중단된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8월 14일부터 재개한다는 것과 아울러 북측 연락사무소 구성원 7명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도 8월 10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박재규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우리측 연락사무소 구성원 명단(8명)을 통보하였다.

이로써 1996년 11월 19일 이후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업무와 기능이 만 3년 9개월만에 재개되었다.

2. 업무 현황

남북연락사무소는 1992년 5월 7일 발효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절차 등 협의하고,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로 하며, 쌍방 공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일방이 휴무를 통보하는 날은 휴무하고 있다. 운영날짜와 시간은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운영일에는 아침 9시와 오후 4시(토요일은 정오) 쌍방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의 업무개시 및 업무종료 통화를 실시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쌍방 각기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 그리고 필요한 수의 연락관으로 구성되며 인원 교체시 이를 상대측에게 통보하고 있다.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지며,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은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전화통지문을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각종 남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방법과 통과시간 등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하며, 자기측 지역으로 오는 상대측 회담대표단의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북을 왕래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사무소는 판문점 「자유의 집」에 있으며, 북측사무소는 「판문각」에 있다.